

## 뉴스요약

1. 특허 등 지재권 사건 소송절차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2.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허 등 지재권 사건 소송절차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기자 질문에 답변;
3. 지식재산권국: 중국 인공지능 분야 발명 특허 순차적으로 증가;
4.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의 시진핑주석의 지식재산보호관련 연설내용 발췌;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허 등 지재권 사건 소송절차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

(2018년 10월 26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 기준을 통일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더욱 강화시키고, 과학기술 혁신 법치환경을 최적화시키며, 혁신 촉진 발전전략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당사자가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식물 신품종, 회로배치,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심판결,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2. 당사자가 특허, 식물 신품종, 회로배치,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1심판결,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3. 이미 법적효력이 발생된 상기 사건의 1심판결, 재판, 합의서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재심, 항소 등을 신청하여 심판감독절차를 적용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하급 인민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 결정 시행일로부터 3년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본 결정의 시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최고인민법원 담당 책임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허 등 지재권 사건 소송절차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기자 질문에 답변**

2018년 10월 26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특허 등 지재권 사건 소송절차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아래 규정이라 함)이 심사통과 되었다. <결정> 발표를 맞이하여 최고인민법원 담당 책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기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Q.<결정> 초안 작성의 배경상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제19회 중앙전면심화개혁 지도팀 제1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심판 분야의 개혁 혁신 강화에 관련한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이 심사통과되었고 “국가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사건 항소 심사체계를 연구 및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8년 2월 중앙전면심화개혁 위원회는 이를 2018년 개혁의 중점업무로 확정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이 앞장서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당조직은 이를 매우 중요시하며 Qiang ZHOU원장은 여러차례 지시를 내려, 중앙의 결정 및 배치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식재산권 사법실무 경험을 총결하고, 이 기초하에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국가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사건 항소 심사체계 수립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과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베이징에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범위내의 특허 등 항소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개혁 사고방향을 형성하였으며, 관련 방안

초안을 작성하여 중앙전면심화개혁 위원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았다.

개혁 요구에 따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설립한 지식재산권 법원의 결정 등 법률이 규정한 항소, 재심 등 소송절차에 대하여 목적성이 있게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혁이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등 사건 소송절차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결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Q.최고인민법원에서 특허 등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민사, 행정 항소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고인민법원 원장 Qiang ZHOU은 <결정> 초안에 관련하여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설명을 하면서 “최고인민법원에서 통일적으로 특허 등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민사, 행정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의 전문화, 관할의 집중화, 절차의 집약화 및 인원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강국과 세계 과학기술 강국의 수립에 있어서 유력한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혁신을 격려하고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혁신은 발전을 이끌어 가는 제1동력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권장하는 기본수단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여 중국은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사건 항소 심리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재판격려와 보호혁신,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발전의 기능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발명, 실용신안 특허 등 항소 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 법치환경을 최적화하고, 혁신 촉진 발전전략의 실시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두개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지식재산권강국, 세계 과학기술 강국의 건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시진핑 총서기는 “재산권보호 특허 지식재산권보호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지식재산권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강화하는것은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바 중국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대 원동력 (激勵) 이기도 하다”고 특별히 지적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 등 항소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외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 보호하는데 유리하고, 법치화, 국제화, 간편화한 혁신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의 형성을 촉진하여 국내, 국제 두 대국을 위해 더욱 잘 서비스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새로운 구도의 형성을 추진한다. 셋째, 재판표준을 통일하고 규범화하는데 유리하다. 특허 등 사건은 특수한 전문성, 고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신형의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 다수이다. 현행 심리체계하에서 지식재산권 유효성 문제는 행정무효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또한 특허권 침해 2심 사건은 각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표준이 불일치한 문제가 존재한다. 해당 유형의 민사와 행정사건의 2심 심리권한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지식재산권 효력 판단과 권리침해 판단에 관련하여 두 소송절차와 재판표준의 연결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재판표준 불일치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하며 지식재산권 재판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도를 확대하며, 사법 공신력을 확실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Q.<결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포함되는가?**

<결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사건에는 베이징지식재산권 법원의 특허, 식물新品种, 회로배치 등 3종류의 등록 확권 행정사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사건이 포함되고, 고급인민법원, 관련 중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원의 특허, 식물新品种, 회로배치,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독점 등 기타 행정사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사건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상기 행정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발휘하게 된다.

**Q.왜 <규정> 제1조에서는 왜 디자인 특허를 규정하지 않았는가?**

디자인 특허의 기술성은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보다 약하다. 사건량, 심사팀, 업무 연속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 제1조에서는 디자인 특허를 포함하지 않았다. <결정>이 시행된 후, 관련 중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에서 내린 디자인 특허 민사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여전히 1심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하지만 <규정> 제2조에서 말하는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와 디자인 특허 3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Q.<결정> 시행이후, 특허 등 항소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은 확정판결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감독을 진행하는가?**

당사자가 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권 법정)에서 내린 2심 재판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의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는 현재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와 행정 항소 사건을 각 민사, 행정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재심과 항소사건은 심판감독법정에서 심리하는 체계와 일치하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 대한 사법해석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사건 접수, 심판감독 절차, 심판권 운행 등 문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하도록 한다.

**Q.<결정> 시행이후 최고인민법원은 더욱 많은 특허 등 항소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는 최고심판기구의 기능 확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헌법과 인민법원 조직법이 최고인민법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이다. 특허 등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국내와 국제 두 대국과 관계되며, 지식재산권 강국과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고인민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사건의 재판표준을 더욱 통일시키고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했던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등 항소사건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오직 일부 특허 등 소수 항소사건의 2심 법원 등급을 약간 조정하는데 불과하다. 최고인민법원의 기능 확정, 2심 중심제도, 법원 조직 체계는 이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다.

**Q.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설립 상황에 대하여 조금 알려줄 수 없는가?**

최고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법정의 편성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분화 방안을 작성하고 진행스케줄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진도 계획서를 만들어 2018년 연말 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국: 중국 인공지능 분야 발명 특허 순차적으로 증가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2017년 중국 인공지능 분야 주요 통계데이터 보고”(아래 보고라 함)를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인공지능 발명 특허 출원공개량과 발명 특허 등록량은 각각 4.6284만건과 1.7477만건이다. 통계분석 결과, 2017년 중국 인공지능 분야 발명 특허는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초 알고리즘의 증가속도는 뚜렷하며, 기초 알고리즘과 기초 하드웨어 분야에서 대학교와 과학연구 기관이 현저한 우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은 수직응용 분야에서 절대적 우세를 차지한다.

통계 데이터를 보면, 2017년 중국 인공지능 발명 특허 출원공개량은 4.6284만건이고, 그 중 국내 출원공개량은 4.1707만건이며 해외에서 중국으로의 출원공개량은 4577건이다. 2017년 중국 인공지능 발명 특허 등록량은 1.7477만건이고, 그 중 국내 발명 특허 등록량은 1.6595만건이며 해외에서 중국으로의 발명 특허 등록량은 882만건이다. 2017년 중국 인공지능 발명 특허 등록량 랭킹에서 광둥성은 4777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해외에서 중국으로의 발명 특허 등록량 국가별 랭킹에서 미국이 317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통계데이터를 보면, 중국 인공지능 전반적인 발달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격차가 있다. 특히 기초이론, 핵심 알고리즘, 기초 하드웨어 및 중요 설비 등 방면에서 혁신 투입을 확대하여 새로운 형세하에서 더욱 큰 발전과 제고를 가져와야 한다.’

##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의 시진핑주석의 지식재산보호관련 연설내용

11월 5일 전세계에서 주목하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hanghai) 전세계 130여개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온 3000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이번 박람회 개막식에서 시진핑주석은 중국의 개방을 더욱 추진할데 대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시진핑주석은 아래 몇가지 방면으로부터 추진 강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지적하였다.

1. 수입 잠재력을 자극한다. 중국은 국내 소비 상승추세에 맞추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국민 소득 증가, 소비 능력 강화, 중고급 소비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 개발을 촉진하여 국내시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수입공간을 확대시킨다. 중국은 추가 관세 인하를 통해 통관 편리성을 높이고 수입 절차 제도의 비용을 낮추며 크로스보더(국가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종과 모델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2. 시장진입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중국은 이미 외국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간소화 하였고 투자 제한도 감소하였으며 투자 자유화 수준을 향상시켰다. 중국은 금융업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채광업, 제조업 개방을 심화시키고 통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의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며,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국내 시장의 교육, 의료 등 부족한 분야에 외국 투자 지분 제한도 완화할 것이다. 15년후, 중국 수입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USD 30만억불과 USD 10만억불을 초과할 전망이다.

3. 국제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법규의 마련을 가속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련 법률 체계를 개선하며, 진입 전 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심화 실시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 비즈니스 관례를 존중하고, 중국 국내에서 등록된 각 유형의 기업들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할 것이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이며, 지식재산권 심사품질과 심사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률 위반시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것이다.

4. 대외개방의 새 고지를 구축한다. 중국은 자유무역시범지역의 심화 개혁혁신을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차별화 모색을 심화하고 압박 테스트를 강화하여 자유무역시범구가 개혁개방의 시범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하이난에 자유무역항구 정책 및 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연구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구 건설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5. 다국간 및 양국간 협력 발전을 추진하다. 중국은 조속히 지역 전면 경제 파트너 관계 협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중국-유럽 투자 협정 담판을 신속히 추진하길 원하며, 중·일·한 자유무역구 담판 속도를 앞당기길 기대한다. 중국은 계속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누리는 '공상공건공향(共商共建共享)'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더욱 많은 무역 플랫폼을 구축해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이 주변 국가와 투자 합작을 진행하는것을 격려한다. 또한 생태, 과학기술, 문화, 민생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글로벌 개방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